

교육부

수신자 수신자참조

(경유)

제목 청탁금지법 관련 유의사항 안내(기념품 등)

1.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7호의 수수 금지 예외 금품 등에 해당하는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의 요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, **향후 학교 홍보용품 제작 시 제작 대상, 목적, 가격의 적정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청탁금지법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**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< 학교 및 학교법인 매뉴얼(p.83) >	
?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7호의 수수 금지 예외 금품 등에 해당하는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의 요건 중 불특정 다수인은 단순히 수의 개념이 아니라 <u>제공의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아</u> 대상자 선택의 무작위성이 보장되는 것을 의미	
?기념품·홍보용품 등에 해당하는지는 <u>기관의 로고·명칭 표시 유무, 제작 목적, 가액, 수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</u>	
- 특별히 가격 제한은 없으나 <u>사회통념에 비추어</u> 기념품이나 홍보용품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<u>적당한 가격</u> 이어야 함	

2. 아울러, 공직자등은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에는 **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제공받은 금품등을 지체없이 반환**하여야 합니다. 금품등을 반환하였더라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징계처분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니 신고의무 미 이행으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소속 교직원들에게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 끝.

교 육 부 장 관

수신자 고등교육기관전체, 대학법인

주무관

신소연

행정사무관

이흥복

민원조사담당관

전결 02/21

이병석

협조자

시행 민원조사담당관-1484 (2017.02.21.)

접수 기획예산과-2192 (2017.02.21.)

우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(어진동)

/ www.moe.go.kr

전화 044-203-6074

전송 044-203-6093

/ sinso1209@moe.go.kr

/ 공개(1,2,3,4,5,6,7,8)

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한 학교